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6. 2 선고 2020가단5323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B

변 론 종결 2021. 4. 28.

판 결 선 고 2021. 6. 2.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가. D과 피고 사이에 2016. 6. 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D에게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1) 2016. 6. 9. 접수 제6467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D을 상대로 제기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가단104251호 건물등철거 사건에서 2015. 7. 17. 'D은 2016. 4. 30.까지 원고로부터 경북 칠곡군 E 전 2,053㎡를 매매대금 1억 1,575만 원에 매수하고, 위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취득일로부터 조정성립일까지의 임료 425만 원을 2016. 4. 30.까지 지급하며, 조정성립일로부터 2016. 4. 30.까지 매월 말일에 25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하였다.

나. D은 그가 소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6. 6. 7. 처인 피고와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피고 앞으로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D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이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C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행위는 D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에 기한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를 성립하고, D은 피고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채권자들을 해하게 됨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며, 이때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현정

부동산의 표시

[집합건물]

1동의 건물의 표시

대구광역시 달서구	
	동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철근콘크리트조 점사스라브지장 20층 공동주택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층	호	철근콘크리트조 134,9834㎡
-----	---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호	소재지번	지목	면적
1.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	56261.1㎡
대지권종류		대지권비율	
1 소유권대지권		56261.1분의 69,7954	

1) 원고 청구취지의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의 오기로 본다.